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9조제3항 관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사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1.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정보(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단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2. 남양주도시공사 및 소속기관의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제29조)
3.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4.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의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5.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6.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
7.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8.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내용 및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9.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규정·지침 등 '비법규사항'은 제외)
10.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사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함 (대법원 2006. 1.13. 2004두 12629 판결)

1. 정보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취약사항에 관련된 정보
2. 군시설 건설공사(건축설계, 구조설계 및 구조계산서 등) 및 보상관련 정보

3. 보안정책, 을지연습, 직장예비군 편성에 관한정보(군사훈련) 및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보안정책 등 비밀·대외비 관련 자료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
4. 정보통신망 구성도, IP주소,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공사경영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6. 사이버안전 분야 위기대응 및 통합연습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재난관리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사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가. 방재, 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 및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나.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청사·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위험물의 저장위치,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3. 수사관계 조회사항 및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또는 피의자)에 관한 정보
4.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5. 집합건물이나 관공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의 설계도면 (단면도, 입면도, 구조도, 설비도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사유** :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한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1. 진행 중인 재판관련 정보로서 공개 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2.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판결 전 재판기록,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단, 재판제목과 재판진행상황은 공개
3.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사실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등
4.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5. 감사업무 관련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특정직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비공개 사유** :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1.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2.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4.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 가.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사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사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5.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가.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6. 공사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사 내부의 회의, 의견 교환기록), 공사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7. 각종 법령,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정부·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8.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9.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공사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10. 감사실시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 가. 감사 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사항
 - 나. 감사실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회의록, 감사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다. 감사관련 정보,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부조리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라.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11.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 (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12. 조직 개편·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서 있는 정보
13.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가. 직원채용, 승진, 종합근무(인사)평정, 다면평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나. 인사기록카드, 인사위원회 관련자료, 징계·상훈관련자료, 인사제도 검토자료
 - 다. 급여 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자료
 - 라. 퇴직금관련, 사내복지기금 대출관련, 주거안정지원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포상 등의 수상자명단 등은 공개
14.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교육·연수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15. 직원임용시험, 중개사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문제,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6. 노조 및 단체협상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7.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가.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 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나.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다.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18. 토지수용재결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19. 감사·감독·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문서
 - 가. 신기술·신자재사용에 대한 개선요구, 통보사항(단, 공사 채택 시까지)
20. 공사의 건설사업 계획수립기준 관련정보 및 건설사업 승인 업무에 따른 중앙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심의업무 관련 정보
21. 지구지정 설계용역자료, 진행 중인 용역의 각종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부터 공사 발주 전까지의 각종 설계도서 및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연구용역 결과 등에 관한 정보
22. 수립중인 장·단기 도시정비 시행계획, 사업지구지정 전 신규사업후보지(예정지) 조사 및 선정계획, 투자사업 타당성(사업성) 자료 및 지정제안 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
23.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24. 상가·대지 예가결정 및 주택 등의 분양가격산정, 임대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25.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 과정에 있는 정보
26. 그 밖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사가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사가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사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13. 2004두12629 판결)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 ※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중 개인의 인적사항 및 각종 신고·고발 등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3. 개별 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 ※ 단, 개별법령에 행정 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4. 징계관련 정보
5.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 결과 등)
6. 공사 홈페이지 등 각종 정보시스템 내 개인에 관한 정보
7. 각종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 정보
8.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가. 타인의 보상금 산정 내역 및 보상금액, 토지수용재결관련정보 (재결서, 감정 평가서 등)
 - 나. 보상과 관련한 계약서, 보성관련 서류 등 개인(법인)재산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다.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

라.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격심사평가관련서류, 계약서 및 첨부서류, 입찰서 등 입찰관련 자료의 개인정보

마. 공사의 각종 심의회 위원 등 다양한 명칭의 형태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바.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채권·채무관련 정보, 납세증명서) 등

사. 감사결과 등에 관한 개인정보

9. 직원의 개인정보

가.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나. 근무상황부중 연가·병가 사유

다. 특정인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라.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단,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10.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

※ 단,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11. 임대주택 입주신청자 개인신상정보

12.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발언자의 인적사항

※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른 판단의 여지가 있음.

13.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14.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다.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가.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령」에 따라 운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사유**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1.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 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상 비밀사항에 해당되는 정보
 - ※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 가. 중장기 재무계획, 목표손익 내부평가자료 및 당해 연도 목표손익 부여자료, MIS 정기 추정자료 등 손익추정 관련자료
 - 나. 택지개발사업 등 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사업분석 등의 자료와 각종 협약서(LOI, MOU, 본 협약서 등)
 - 다. 주택·대지·복리시설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관리(준공원가)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정보
 - 라. 용지보상 관련 내부 방침 및 용지공급 관련 지침 또는 내부 방침
 - 마. 자산매각 및 투자유치 관련 내부 방침 및 관련 정보
 - 바. 조성원가 산정 세부내역, 제비용율 및 할인율 산정내역, 수지분석자료
 - ※ 단, 조성원가 공개대상 사업지구의 공개대상항목은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외 사업지구도 이를 준용함
 - 사. 각종 용역·공사 관련 발주·착수·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 아. 입찰지정(예정)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 선정관련 제출자료(제안서 평가 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술평가·과업수행 결과
 - 자. 턴키(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
 - 차. 친환경 건축물인정 신청자료 및 인정평가 심의내용, 주택성능 인정신청 및 인정평가, 심의내용에 관련된 정보
 - 카. 위탁연구 수행 시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관련된 정보

다. 주택시장 정책, 동향 등 마케팅 조사, 분석 등에 관련된 정보와 판매촉진 및 홍보전략 관련 정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가 제출한 영업관련 정보, 심사서류 및 심사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파.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3.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예정자의 경영 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4. 정당한 이익(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가.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나.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다.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5. 감사 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 용지(보상, 공급) 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관련 제출자료 및 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 약해(약을 잘못 쓰거나 과용하여 받은 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은 공개

7. 사업추진을 위해 작성되는 계획, 검토안 등 대외에 제공되는 공개 서류 외 시행되지 아니한 내부결정문서

가. 각종 인허가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작성되는 내부분서

나. 공사감독서류(감독일지, 자재 및 시공관련 서류, 설계변경 서류 등)

8.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사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 할 수 있음.

1. 정부의 토지·주택 등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2. 운영계획수립자료, 신규 사업 우선순위 결정자료 등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 사업 후보지 조사 관련 자료
3. 택지개발사업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 지구,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 지정고시 전의 관련 자료 및 예정지구 제안 자료 등
4. 사업예정지 선정을 위한 조사, 지구지정제안, 협의자료 및 주민공람 공고이전의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경기동향 및 전망분석 내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총괄사업관리자 업무협약 및 재정비촉진 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정보
8. 도시계획 관련 사업결정·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
9.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